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419
----------	-------

발의연월일 : 2024. 1. 29.

발 의 자 : 윤창현 · 이 용 · 송석준
윤주경 · 전주혜 · 이종성
김승수 · 윤한홍 · 김희곤
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제정 후 시행(2023. 4. 27.)되어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마련됨으로써 지역의 치안유지·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등 안전한 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에도 자율방범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초소 또는 사무실조차 갖추지 못한 연합대가 있는가 하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조직도 다수인 상황임.

이에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범대원의 노고를 국가적으로 기념하고자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

한 비용과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 활동을 공무로 인정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부상·사망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및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제정과 운영) ①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며 자율방범대원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고, 자율방범대의 날부터 1주간을 자율방범주간으로 한다.

②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시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를 “활동(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등)과 운영(사무실·초소 설치비 또는 임차료 등)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의 수행 또는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제정</u> <u>과 운영) ① 자율방범대의 승</u> <u>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u> <u>고 그 업적을 기리며 자율방범</u> <u>대원들의 자긍심과 공지를 고</u> <u>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u> <u>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u> <u>기념행사를 하고, 자율방범대의</u> <u>날부터 1주간을 자율방범주간</u> <u>으로 한다.</u> <u>②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u> <u>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u> <u>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 · 광역</u> <u>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u> <u>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하여</u> <u>시행할 수 있다.</u>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u>활동에 필요한 복장 · 장</u> <u>비의 구입, 교육 · 훈련, 포상</u> <u>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u> <u>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u>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 ----- ----- ----- ---<u>활동(복장 · 장비의 구입,</u> <u>교육 · 훈련 등)과 운영(사무실</u> <u>· 초소 설치비 또는 임차료</u> <u>등)에</u>-----

있다. ② (생 략) <u><신 설></u> <u><신 설></u>	-----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④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의 수행 또는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u>
---	---